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6. 19.

行政委員會
専門委員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06호로 2019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건립 관리계획 변경】

- 당초 영등포빗물펌프장을 수직 증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시
설을 건립하고자 지난 제20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사업지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재의결을 받고자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건립 관리계획 변경

구분	재산의 표시			소유자	건물 재산가액 (단위:천원)		비 고		
	소재지	취득현황(m^2)			단가 (천원/ m^2)	금액			
		토지	건물						
변경 전	영등포동2가 5-2 (영등포 빗물펌프장)	-	증축 후 면적합 : 913 m^2 - 기존 : 513 m^2 - 증축 : 400 m^2	영등포구	3,775	1,510,000	제207회 구의회 임시회 의결		
변경 후	선유로3길 10 (문래동5가) 하우스디비즈	-	2개실 매입 면적합: 367 m^2 - 106호 (90 m^2) - 405호 (277 m^2)	분양권자	3,569	1,310,000	사업위치 변경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이상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됨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 2018년도 제2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등포동 2가 5-2 번지 영등포펌프장 건물에 지상2개층(2층,3층), 연면적 400m² 규모의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자문회의 결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자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 2018년 1월17일 서울시에 “빗물펌프장 유휴 공간 맞춤형 주민친화시설 조성 추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 2018년 3월 15억 1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 동 시설을 증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시설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 2018년 9월 영등포빗물펌프장 증축 관련 건축자문 회의결과 안전성 문제와 공사비용 과다 발생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 2019년 3월까지 대체 부지를 물색한 후,
- 2019년 5월 서울시에 지식산업센터 매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 2019. 7월 대체지(부지) 매입 계약을 시작으로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11월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조성 완료 할 예정임.
- 검토결과, 본 승인안은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된 영등포 빗물펌프장의 대체 부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자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위치 변경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 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
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
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페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페센트를 초과하여 증

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